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FRS 9: 분류 및 측정과 조건변경 - Q & A

March 2015

INT2015-12

At a glance

IASB 는 2014 년 7 월 24 일에 *IAS 39* 의 대부분의 내용을 대체하는 *IFRS 9*, ‘금융상품’의 완성본을 발표하였다. 동 최종 기준서는 이전 버전의 *IFRS 9* 에서 수정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In depth: IFRS 9 –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을 참고하기 바란다.

동 문서에는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시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공통의 이슈 중 일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IFRS 9* 에 따른 금융자산의 손상과 위험회피 관련 이슈는 별도의 문서로 다루어진다.

Contents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으로만 구성	1
신용위험조정 대여금(ratchet loans)의 회계처리	1
'유의적으로 다름'의 의미	2
계약조건과 법적인 조건의 상호작용	3
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의 SPPI의 평가	4
벤치마크 test	6
사업모형의 평가	8
단일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한도에 따른 매도	8
신디케이트론	9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한 사업모형 분류에서의 공정가치 정보의 영향	10
지분상품	11
풋가능 지분상품 투자의 분류	11
조건변경	12
상업적 이유로 인해 조건이 변경된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12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으로만 구성

신용위험조정 대여금(*ratchet loans*)의 회계처리

Question:

일부 대여금은 신용위험에 따라 이자율이 재조정되는(*price-ratcheting*) 조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 하에서 계약상의 이자율은 차입자의 신용위험(예: 차입자의 특정자금조달비율)의 악화와 연계되는 하나 이상의 미리 정해진 사건의 발생에 대해 사전에 정한 이자율 구간에 따라 재조정된다. 이러한 조항은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변경될 때 대여금의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포함된다.

신용위험에 따라 이자율이 재조정되는(*ratchet*) 조항을 포함하는 대여금이 원리금 지급만의 현금흐름('SPPI') 조건을 충족하는가?

Solution:

SPPI 조건은 아래의 경우에 충족될 것이다:

- 사전에 정해진 사건이 대여금의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한다. 그리고,
- 증가된 신용위험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새로운 이자율이 계약의 최초 체결시점에 설정된다.

IFRS 9 문단 B4.1.10 은 차입자가 특정 횡수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자율이 더 높게 재조정되는 금융상품을 제시한다. 제시된 예는 그러한 재조정 특징이 SPPI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위험에 따라 이자율이 재조정되는(*ratchet*) 조항은 이러한 예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유의적으로 다름’의 의미

Question:

한 기업은 기초이자율에 따라 액면이자가 구조적으로 변동되어 산정되는 채권(예: a constant maturity swap (‘CMS’) bond)을 발행하였다.

IFRS 9 하에서 그러한 채권은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에 대한 지침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4.1.9C는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결과적으로 할인하지 아니한 기준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른’ 계약상 현금흐름을 초래한다면, 그러한 금융자산은 원리금 지급만의 현금흐름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전체의 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TPL’)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IAS 39의 문단 AG33(a)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double-double test’가 IFRS 9 하에서 ‘유의적으로 다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가?

Solution:

아니다. ‘유의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경영진이 결정해야 할 판단의 문제이고 개별 상품을 기초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가 CMS 채권과 같은 상품에서 충족되는지 여부는 사채의 만기, 수익률 곡선 그리고 사채의 만기에 걸쳐 수익률 곡선에서의 합리적으로 가능한 변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IAS 39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double-double test’와 같이 적용이 필수적인 명시적 기준(bright-line test)은 없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계약조건과 법적인 조건의 상호작용

Question:

IFRS 9 의 문단 B4.1.13 은 금융상품에 변화를 일으키는 규제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은 SPPI 조건을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금융상품 계약조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서 상의 금융상품 E 는 SPPI 조건을 충족하는 예시로서 구체적으로 손실부담(bail-in)금융상품을 언급한다.

SPPI 기준을 평가할 때, bail-in 조항과 같이 법규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언제 고려되어야만 하는가?

Solution:

Bail-in 법규의 존재를 인정하는 bail-in 조항은 SPPI 기준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러한 조항은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 존재하지 않을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수적이다.

- Bail-in 규정이 bail-in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bail-in 사건이 충족되는지를 포함하여 모든 주요한 조건을 그 자체적으로 명시한다.
- Bail-in 사건의 효과는 규제기관의 재량에 있을 수 있고, 계약이 기업에게 재량을 허용하거나 사전적 조기행사조항(earlier trigger)을 부여함으로써 추가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계약조건은 규정이 변경된다면 금융상품의 bail-in 조건이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변경되도록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계약조건은 회생불가능을 시사하는 사건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한다. 이는 일부 나라에서의 부채약정에 포함되는 조항으로 그러한 조정이 없다면 기업은 회생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기업에게 발행된 채무에 대해 특정조건 변경을 지시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계약상의 인용(reference)은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처리에 관련된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단순한 손실부담조항과는 다르게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SPPI 조건을 평가할 때 그러한 조항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의 SPPI의 평가

Question:

많은 나라의 은행은 변동이자율의 대출을 제공할 때 참고하는 이자율로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은행은 은행 자체의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시장 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LIBOR 나 다른 시장이자율과 같은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기초로 한다. 은행은 은행자체의 조달금리의 변동 및 조달금리의 변동과 기준금리의 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한다. 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다면, 기준금리에 마진을 더해서 산정되는 각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또한 조정될 것이다.

더 세부적인 분석의 수행이 없이도, 대출금에 대해 IFRS 9 하에서 SPPI 를 평가할 목적으로 ‘기본금리’가 기본 대출계약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가?

Solution:

그렇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기본금리는 신용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계약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기본금리는 세부적인 분석 없이도 SPPI 의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이는 ‘대여자의 다양한 공개된 이자율’이 SPPI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문단 B4.1.13 의 B 상품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

은행이 금융시장 또는 거시경제나 규제가 변동되었을 경우(은행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은 SPPI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가?

Solution:

이는 판단사항이며 판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자율을 변경하는 계약이 예를 들어 기본 대출계약과 관련된 비용 또는 규제의 변화와 관련된 비용을 단순히 전가하는 것이라면, 이는 여전히 SPPI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상기 질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과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에 의한 다른 비용이나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SPPI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Question:

은행이 시장상황과 규제환경에 관련 없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면 그러한 상품은 SPPI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Solution: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변화가 질문상의 상품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예를 들어 변동이자율의 모기지론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왔던 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X라는 국가를 생각해보자. 해당 모기지론은 은행이 그들의 재량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시킬 수 자유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상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기본적인 사장이자율보다 이자율을 더 높이는 경우, X 국가의 은행권에서의 자연적인 경쟁상황은 고객들이 그들의 대출을 쉽게 차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은행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보다 더 높게 이자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예에서 X 국가의 은행에 의해 발행된 대출은 **SPPI**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은행은 지분가격처럼 신용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 이외의 다른 변수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변화를 잠재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대출금은 **SPPI**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벤치마크 test

Question: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변형되었다면, 기업들은 그러한 변형에도 불구하고 SPPI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test 를 수행해야 한다. 일부 상황에서는 기업이 질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SPPI 조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할 때 언제 질적 평가로 충분한 것인가?

Solution:

IFRS 9 은 ‘변형된’과 ‘불완전한’의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IFRS 9 의 기본적인 원칙은 금융자산이 기본 대출계약에 관련되지 않은 위험이나 변동성(예를 들어, 지분가격이나 상품가격과 같이)에 대한 노출을 언급하는 계약조건을 포함한다면, 이 경우 SPPI 조건은 벤치마크 test 의 수행 없이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단의 표는 IFRS 9 기준하에서 변형되었다고(즉, 불완전한)간주되는 계약상 특징에 대한 사례의 리스트를 담고 있다. 기준서는 질적인 평가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제시한다. 이러한 리스트는 완전하지 않으며, 해당 평가는 단지 지침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평가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조건을 개별 건 별로 분석해야 한다.

설명/예	질적 평가가 충분한가?
액면이자 기준금리(benchmark)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역변동금리상품의 경우 (6% - 2 x 3M EURIBOR)	IFRS 9 의 문단 B4.1.14 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품 G 에 대한 지침에 따라, SPPI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질적 평가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통화와 다른 통화의 이자율로 조정되는 경우 (EURIBOR 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되지만 \$ 통화로 이자가 지급되는 \$로 표시되는 사채)	통화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질적 평가로 충분하며 SPPI 조건은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통화간 관계가 명확하다면(예를 들어 하나의 통화가 다른 통화로 고정되는 경우), SPPI 조건이 충족되는 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양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reference) 이자율이 미리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품의 이자율이 조정되는 경우 (참고(reference) 이자율 = 1 개월 EURIBOR; 1 개월 EURIBOR 이자율이 이전의 고정이자율과 비교하였을 때 25bp 이상으로 변경 되었을 때 만 상품의	벤치마크 test 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러한 상품은 cap 조건부 변동이자율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질문에서 제시된 금융상품은 SPPI 조건을 충족 한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설명/예	질적 평가가 충분한가?
<p>이자율이 조정된다.)</p> <p>이자율이 다른 여러 기준금리(benchmark)의 평균치로 계산되는 경우</p> <p>(액면이자율은 3/6 그리고 12개월 EURIBOR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고정된다.)</p>	<p>SPPI 기준이 충족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양적 평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p>
<p>이자율이 특정 기준금리(benchmark)의 평균치로 계산되는 경우</p> <p>(이자율이 지난 3개월 EURIBOR의 평균치로 계산된다.)</p>	<p>사용된 기준금리가 짧은 기간 동안의 평균치라면(예를 들어 3개월)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질적 평가로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SPPI 기준은 충족될 것이다. 기준금리의 평균치가 더 긴 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양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p>
<p>이자율이 기준금리에 1 이외의 배수를 적용하여 계산되는 경우</p> <p>(이자율은 1개월 EURIBOR*1.5로 계산된다.)</p>	<p>1 이외의 배수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레버리지 되었다고 간주되므로 변형테스트와 SPPI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p> <p>1보다 작은 배수의 경우는 변형테스트 및 SPPI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p>
<p>이자율이 다른 통화의 인플레이션에 연계된 경우</p> <p>(EUR 사채의 이자율이 미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p>	<p>통화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질적 평가를 근거로 SPPI 기준은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통화간 관계가 명확하다면, SPPI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양적 평가가 요구될 것이다.</p>
<p>이자율이 기간이 지난 기준금리(benchmark)를 기초로 산정되는 경우</p> <p>(이전 월의 마지막 날 기준의 3개월 EURIBOR를 사용하여 이자율이 계산된다.)</p>	<p>질적 평가에 근거하여 시간상의 차이가 너무 길지 않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이자율이 아니라면 SPPI 기준은 충족 될 것이다.</p>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사업모형의 평가

단일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한도에 따른 매도

Question:

은행 신용위험 관리 체계와 규제체제는 종종 하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은행의 신용위험 노출 정도(즉, 신용위험의 집중)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신용편중위험으로 인해 신용위험한도를 위반하거나 초과하는 상황에 근접할 경우, 은행은 적극적으로 해당 대출금을 매도하려고 할 것이다.

SPPI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신용편중위험에 대응한 이러한 매도에 대해 포트폴리오가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목적의 사업모형을 충족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Solution:

신용편중위험에 대응하여 그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매도하는 은행은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는 사업모형을 갖게 된다. 이는 은행이 신용위험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때까지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각각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사실과 환경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디케이트론

Question:

은행은 신디케이트론의 주도적인 주선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제공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주도적인 주선자인 은행의 위험성향을 초과한다. 은행의 신용위험위원회는 제한된 기간 안에(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내가 될 것이다) 정해진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판매될 것을 기초로 그러한 거래를 승인할 것이다.

신디케이트론을 분류함에 있어 은행이 신용한도내의 대출금의 일부분과 위험성향에 따른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일부분에 대해 다른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는가?

Solution:

그렇다. 회계단위는 대출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IFRS 9의 분류모형은 은행에 의해 식별된 대출금의 두 가지 요소에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매도될 초과 대출금에 대한 사업모형과는 별도로 신용 한도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사업모형을 평가해야 한다.

은행의 목적이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명시된 위험한도 이내인 대출금의 일부분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이 상품이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대출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산의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하는 목적의 사업모형으로 간주될 것이며 FVTPL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출금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사업모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한 사업 모형 분류에서의 공정가치 정보의 영향

Question:

은행 X는 repo와 reverse repo 거래를 실행하였다. 모든 reverse repo 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만기까지 보유된다. 그러나 은행의 트레이더(trader)는 공정가치 정보에 근거하여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거나 초단기성 repo의 만기연장(overnight repos roll)을 중단함으로써 그들의 현금흐름 노출을 관리한다. 이는 수익률곡선의 다양한 구간에 대한 노출을 생성하거나 제거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며 그로 인해 마치 그들이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얻게 된다. 공정가치 정보는 관리보고와 보상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업모형이 '수취목적의 보유'인지?

Solution:

아니다. 만기를 가지는 Reverse repo 자산은 '수취목적의 보유' 사업모형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IFRS 9의 문단 4.1.2의 조건을 일반적으로는 충족할 것이다. 그러나 IFRS 9의 문단 B4.1.6은 '관리되고 그 성과가 공정가치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면서 금융자산을 매도하기 위해 보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공정가치를 기초로 한 관리정보의 사용은 상쇄되는 포지션의 추가로 공정가치 이익과 손실을 실현하는 사업모형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러한 자산을 FVTPL로 분류하는 것은 경영자가 스스로 사업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이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회수할 수 있는 만기까지 보유되더라도 거래의 가감과 공정가치기준에 대한 노출을 관리한다는 사실이 FVTPL 분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IFRS 9의 문단 BC 4.78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지분상품

풋가능 지분상품 투자의 분류

Question:

기업이 풋가능 지분상품을 포함하는 펀드에 투자하였다. 즉 투자자는 펀드의 지분 비율에 따른 순자산을 대가로 주식을 펀드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풋가능 지분상품은 발행자의 관점에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는 기준서상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IAS 32에서의 예외사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풋가능 지분상품에 대해 IFRS 9의 문단 5.7.5에 포함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OCI로 인식되는 취소불가능선택권이 이용가능한지?

Solution:

그렇지 않다. IFRS 9의 문단 BC5.21은 해당 선택권이 오직 IAS 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풋가능 상품이 회계목적으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IAS 32하에서의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은 지분상품에 대한 FVOCI 옵션을 적용할 수 없고 풋가능 주식은 FVTPL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조건변경

상업적 이유로 인해 조건이 변경된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Question:

때때로 은행은 상업적 이유로 대출금의 조건을 변경한다(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가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조건은 새로운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재조정할 것이다.

새로운 조건이 현행 시장 가격에 근거할 때 대출금이 상업적 이유로 조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IFRS 9 하에서 새로운 대출금으로 간주되는 변경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Solution:

아니다. IFRS 9의 제거규정은 대략적으로 IAS 39의 규정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대출금은 IFRS 9 하의 새로운 대출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에서 변경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IFRS 9의 문단 5.4.3 하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거래는 새로운 대출금을 인식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대출금이 액면금액과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였었다면 이는 실질이 새로운 시장이자율의 대출금 발행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그리고 제거)하는 거래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